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38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나623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3884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특수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형범

변론종결 2023. 9. 6.

판결선고 2023.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1,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9.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 5. 15.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자금대여나 이행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5. 15.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02. 5. 29.부터 2004. 5.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강남세무서는 2004. 8. 30.경 이 사건 출자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그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 사건 출자증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고, 위 압류 통지에 따른 사전구상권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출자금 상당액을 예수금(이하 ‘이 사건 예수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0.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예수금이 담보하는 사전구상채권은 2010. 2. 14.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예수금의 피담보채권인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법정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901,639원[이 사건 예수금액 5,000만 원 × 상사법정이율 6% × (10 + 110/366)(이 사건 예수금이 담보하는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 다음날인 2010. 2. 1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2020. 6. 3.까지)]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과 함께 체결한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이 약정인으로 하여금 출자금, 예탁금, 예치금, 공제부금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제계약 및 출자증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한 후, 사전구상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반환을 유보한 예수금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제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휘

[별지]

발급일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종류	계약명	보증기간	시효	보증채무 종료, 시효만료일
2002-05-29		145,750,000	2003-02-28			5년	2004-12-14
2002-05-30		66,313,500	2003-04-22			5년	2008-04-23
2002-05-30		196,940,500	2003-04-22			5년	2002-09-08
2002-09-02		132,627,000	2003-08-30			5년	2008-08-31
2002-12-28		72,875,000	2003-12-26			5년	2008-12-27
2003-05-26		287,516,000	2003-12-31			5년	2009-01-01
2003-08-12		7,920,000	2004-07-31			5년	2009-08-01
2003-09-16		37,980,000	2004-09-30			5년	2009-09-31
2003-10-09		4,620,000	2004-02-08			5년	2009-02-09
2003-10-30		1,399,200	2004-01-07			5년	2009-01-08
2003-11-03		6,850,000	2003-12-30			5년	2008-12-31
2003-11-03		37,675,000	2003-12-30			5년	2008-12-31
2003-12-15		2,310,000	2005-02-14			5년	2010-02-15
2003-12-30		6,850,000	2004-12-30			5년	2009-12-31
2004-01-09		82,453,140	2004-12-31			5년	2010-01-01
2004-04-20		3,616,600	2004-12-31			2년	2007-01-01
2004-04-26		100,000,000	2006-03-31		김남구왕장	2년	2008-04-01
2004-05-10		2,500,000	2005-05-03			2년	2007-05-04

